기준가격 정사가경이 뛰다지 않으면, 여자기를 가장 시청으로 사용 전사기와 이 부대되면, 장사기의 취임은 지난된 사건을 기관하였으로 사용

·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

() 유·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,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, 주식분할,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(이론가격으로 산출) (사건 등이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(시장에서 결정)

[조] 해당 사례들이 (H해선 `된가거건'이 없음 즉, 희망 사례 들이 대하면 `돌아가기'이 되어되고, 해당 조카 시경을 통해 '기술가격'을 안올함.

- (네네선 `선가수건'이 없음. 해당 청차건을 통해 '16가건'을 손활함.

  () 신규상장종목은 매매개시전 단일가매매 시간(08:00~09:00)동안 일정가격 범위 내의 접수한 매도 · 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.
  - 최초가격(기준가격)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%(우선주의 경우 50%)~200% 이며 당해종목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가격의 50%~200% 범위내의 호가를 접수합니다.
- ② <u>기준가격 결정이후(09:00 이후)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</u>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.

ヲ평가가격이란

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가격 결정시, 비정상적인 가격의 호가에 의한 주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.

• 평가가격 설정의 기준

○ 당해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은 경우(공모가 KOSDAQ주가)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면 여 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(기업분할, 신설합병 등)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(중한,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

`kosDAQ'에서 `kosPI'로 `이건사감'한 때

구분		평가가격		
신규상장	일반종목	공모가(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)		
	KOSDAQ종목	KOSDAQ시장에서의 최종일 종가		
	지주회사	(상장법인등의시가총액 +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), 주식수 (단, 상장법인등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 최저호가가 격은 50%로 함)		
	<u>기타</u>	주당순자산가치(순자산가액을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 행주식수로 나눈 수치)		
재상장	기업분할(정상)	분할전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시가총액×순 자산분할비율/분할후종류별주식수		
	기업분할(부실)	존속법인 : 분할전 최종매매거래일의 종가 신설법인 : 주당순자산가치		
	신설합병	합병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합 계/합병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(최저호가가격은 5 0%로 함)		
주식병합(감자)		전일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가격(저가에 의한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)		
우선주	우선주 최초상장	보통주의 전일종가		
	종류가 다른 우선주의 상장	기상장우선주의 전일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		